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22 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태년 · 김영배 · 김준형

김태선 · 김병기 · 권칠승

한민수 · 김영진 · 박지원

송기헌 • 박용갑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, 국제노동기구(ILO)는 이미 1952년부터 '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'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바,「근로기준법」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그런데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, 사업주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의2제1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024호)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 번호 제40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.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"제60조 외에"를 "제60조·제62조의2 외에"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	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		
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			
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			
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	제60조·제62		
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	<u> 조의2 외에</u>		
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			
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	,		
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			
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			
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